

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

2017. 12. 18.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7. 11. 20.

나. 제안자 : 마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7. 11. 20.

○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: 2017. 12. 6.

○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: 2017. 12. 7.

라. 상정일자 :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(2017. 12. 8.)

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(2017. 12. 11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■ 제안설명자 : 기획경제국장 양 재 연

가. 제안이유

○ 지방자치법 제142조 (재산과 기금의 설치)

○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나. 제출내역

○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3. 주요내용

○ 현재 택지개발 사업이 모두 종료되었고, 향후에도 30만㎡ 이상의 택지개발 계획이 불투명하고 또한 최근 3년간 수입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예치금 외에 지출이 없는 등의 사유로 기금 폐지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(전문위원 : 송인수)

1) 변경사유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에 따라 기금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기금 폐지하고,
- 기금의 지출계획에 예치금으로 편성된 기금잔액을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변경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함.

(단위 : 천원)

지 출 계 획			
편 성 목	기 정 액	지출액(변경)	증 감
합 계	12,107	12,107	-
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원	1,050	1,050	-
201 일반운영비	1,050	1,050	-
01 사무관리비	1,050	1,050	-
여유자금 예치	11,057	-	△11,057
602 예치금	11,057	-	△11,057
내부거래	-	11,057	11,057
701 기타회계등 전출금	-	11,057	11,057

- 기타사항 : 추가로 발생한 이자 및 집행잔액 등은 기타수입으로 세입조치

2) 기금조성 규모

- 연도말 기금조성액 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2016년도말 조성액 ㉑	2017년도 기금운용계획			2017년도말 조성액 ㉒=㉑+㉓	비 고
		수입㉓	지출㉔	증감㉕=㉔-㉓		
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	11,922	185	1,050	△865	11,057	

- 기금 총 조성규모 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2017년도말 조성액 ㉑	유자금 미회수 채권 ㉒	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㉓	총 조성규모 ㉔=㉑+㉒+㉓	비 고
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	11,057			11,057	

3) 검토결과

-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30만㎡ 규모이상의 택지개발 시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, 폐기물 처리시설 철시 비용 확보를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,
- 현재 택지개발 사업이 모두 종료되었고, 향후에도 30만㎡ 이상의 택지개발 계획이 불투명하고 또한 최근 3년간 수입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이며 지출은 예치금 외에 지출이 없는 등 기금의 적립금액이 미미한 점 등을 감안하여
- 금번 『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』 폐지에 따라 기금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기금을 폐지 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 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사항 : 없음